

2023년 서울시 약무7급 공채 채용 안내

1. 응시자격 : 20세이상 약사면허 소지자
2. 모집인원 : 48명
3. 시험일정(안)

시험공고	원서접수	시 험 일 정			
		1차2차 병합 (필기시험)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3. 6. 14.(수)	7. 17.(월)~7. 21.(금)	10. 28.(토)	12. 2.(토)	12. 6.(수) ~ 12. 15.(금)	12. 29.(금)

4. 시험과목 : 필수(2) : 화학개론, 약제학
선택(1) : 약전학, 약물학 중 택 1

5. 접수방법
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[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\(gosi.go.kr\)](#))에 접속하여 접수
-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(☎1522-0660)로 문의
-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-3488-2321~8

6. 기출 자료

: <https://hrd.seoul.go.kr/portal/home/mainAction.do>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접속 → 공무원채용(우측상단) → 시험문제&정답

서울시 공직약사 소개

1. 근무지 :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보건소, 시립병원(서북, 은평, 어린이병원), 서울시청(보건의료정책과, 감염병연구센터, 코로나19대응지원과 등), 민생사법경찰단, 강북농수산물검사소

2. 업무내용

- 1) 시청 : 서울시 의료, 약무정책 기획, 수사사무 업무
- 2) 보건소 : 의료기관, 약국, 의료기기업, 안전상비의약품, 화장품업 민원, 법정 업무
의약품안전사용 교육, 공공야간약국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
- 3) 시립병원 : 약제 관리 및 임상관련 사업

3. 근무인원 : 160명

- 서울시 15명, 시립병원 각 10명 내외, 자치구별 각 3~5명

4. 급여체계

: 공무원 봉급표(7급) 기본급 + 각종 수당 + 각종 실비변상(명절휴가비, 상여금 포함)

근무 초반에는 민간분야에 비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으나 매년 호봉이 오름에 따라 기본급의 상승과 더불어 정근수당, 대우공무원 수당 등 경력 우대 수당이 추가됨(민간에서 약사면허를 사용한 경력은 호봉에 100% 반영)

<급여/수당체계>

수당 종류	내용
복리후생비	정액급식비(14만원) + 직급보조비(7~124만원) + 직책급업무추진비 + 특정업무경비
명절휴가비	월봉금액의 60%, 연 2회
연가보상비	1급이하,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
대우공무원 수당	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, 월봉금액의 4.1%
정근수당	월봉금액의 0~50%, 연 2회, 근무연수가 1년 이상부터 5%씩 증가해 50%까지
정근수당가산금	월5~13만원, 추가가산금 포함, 근무 5년 이상부터 지급
성과상여금	지급기준액의 0%~185%, 연1회 이상, S~C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, 연 1회 평가하는 경우 전년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
가족수당	배우자 : 4만원, 자녀 : 첫째 3만원, 둘째 7만원, 셋째이상 11만원 (만 19세 미만) 기타가족 : 월 2만원 (남자 만 60세 이상, 여자 만 55세 이상)
육아휴직수당	육아휴직 지정일부터 최초 1년 : 월봉금액의 80%, 70~150만원 배우자와 순차 휴직 시 3개월 간 월봉금액의 100%, 최대 250만원
특수지근무수당	위험근무수당(9개부문 35개 위험직무종사자, 월3~6만원)
특수업무수당	기술정보수당, 연구업무수당, 특수직무수당 등 12종
초과근무수당	시간외근무수당 : 7급(11,319원), 6급(12,531원), 매월 10시간 정액분 매월 지급

2023년 공무원 봉급표 (별표3)

https://www.mpm.go.kr/mpm/info/resultPay/bizSalary/2023/#pay2023_1

공무원의 수당

<https://www.mpm.go.kr/mpm/info/resultPay/bizPay03/>

5. 워라벨 및 육아혜택

1) 임신, 출산

- 출산 휴가 : 출산 전후 3개월(2명 이상의 경우 4개월)
-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경우 : 출산 전 언제라도 최장 44일(다태아 95일)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, 유산경험, 사산경험, 신청당시 만40세이상,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첨부
- 임신 검진 휴가 :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과 관련된 검진을 위해 휴가 사용
- 모성보호시간 : 임신한 모든 기간 중 하루 2시간 내에서 사용. 하루 4시간이상 최소 근무시간 충족
- 난임치료 시술 휴가 : 시술당일 포함 인공수정(2일), 체외수정(3일), 난자채취 체외수정(4일) 휴가
- 배우자 출산 휴가 : 총 10일 범위내,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 가능
- 유산, 사산 휴가 : 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, 남성 공무원 배우자는 총 3일 휴가
- 여성보건휴가 : 생리기간 중 월 1회 사용 가능. 무급
- 불임, 난임치료 질병휴직 : 진단서 증빙서류 제출.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휴직 횟수에는 제한 없음 휴직 1년 이내(봉급의 70%), 휴직 1년 초과(봉급의 50%)
- 당직근무 면제 : 임신 중, 출산 후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 당직 면제
- 복지포인트 지급 : 2020년 1월1일 이후 임신, 출산 한 공무원에게 자녀 1인당 1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(쌍둥이 20만원)

2) 육아휴직 : 자녀 한 명당 3년까지 사용 가능(쌍둥이의 경우 각각 3년씩 6년)

- 호봉인정 : 첫째, 둘째의 경우 휴직 1년은 호봉 인정, 셋째는 휴직 전체기간 호봉 인정
- 경력인정 : 첫째 자녀만 1년만 인정되고 둘째 이상부터는 휴직기간 전체 인정
-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
- 한 명당 1년간 육아휴직 수당 지급. 월급의 80%(상한선 : 150만원, 하한선 : 70만원)
- 육아휴직 수당의 85%를 매달 지급받고, 15%는 복직을 한 후 7개월째에 한꺼번에 수령
- 기여금은 휴직수당에서 납입 하거나 유예가능
-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입하거나 유예가능
-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대상으로 특정된 자녀를 데리고 가야함

3) 육아시간 : 만 5세이하(생후 72개월이전) 자녀를 둔 경우 1일 2시간(24개월 범위)내에 사용 가능

4) 가족 돌봄 휴가 : 10일

- 유급 : 연간 2일(1자녀), 3일(2자녀 이상) 유급, 휴교, 입학식, 병원진료등에 사용 가능
- 무급 : 자녀 이외의 가족을 돌볼 경우

5) 연가 : 최소 11일~ 최대 21일 연차에 따라 증가

6. 복지혜택

1) 복지포인트

: 근무장소별로 상이, 근속, 가족수에 따라 증가. 자치구에 따라 100~250만원 상당.

2) 건강검진

- 2년에 1회 출생년도(짝,홀수)로 구분하여 지원(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은 받지만 지원은 2년 주기)
- 연령대 별 맞춤형 검진패키지 구성, 지원
- 20, 30대 : 20만원, 40대 : 30만원, 50대이상 : 45만원 지원
- 배우자, 직계가족도 서울시 검진패키지로 검진 가능(단, 지원비용 없음)

3) 서울시 연수원

- 속초, 수안보, 서천, 제주도에 위치
- 1박당 7,000원~25,000원 복지포인트로 사용 가능
- 온천, 사우나, 노래방, 루프탑 수영장, 당구장, 탁구장 등 부대시설 무료 이용

4) 법인 콘도 및 휴양시설 지원

- 35개 지역, 총 265구좌, 7900박수 보유
- 지원금액 : 1박당 12만원(초과금액 본인부담)
- 주말(성수기, 연휴) 최대 2박, 주중 최대 3박 이용가능

5) 일반 휴양시설 지원

-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
- 지원금액 : 1박당 12만원(초과금액 본인부담)
- 법인 콘도 및 연수원으로 충족이 어려운 주말, 공휴일, 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(여름성수기 외 주중지원 불가)
- 서울소재 시설의 경우 여름성수기에 한해서 지원 가능(그 외의 기간에는 서울지역 지원 불가능)
- 콘도, 리조트, 펜션, 캠핑장 등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(모텔, 민박, 해외 및 서울 소재 시설, 에어비앤비 등의 지원에서 제외)
- 법인콘도 및 일반 휴양시설은 연 5박 내 지원

6) 서울 캠핑장 이용료 지원

- 운영시설 : 8개소,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
- 운영기간 : 3~11월(9개월), 동절기 3개월 휴장
- 이용금액 : 1박당 25,300원

7. 직원생활안정

1) 전세자금 제도

- 서울시 무주택자 공무원 1인당 최고 1억원(이자 연 1.0%. 보증보험료 약 0.4%)
- 전세보증금의 50% 범위내(전세보증금 6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함/4인가구 이상 별도 기준)
-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100% 지원

2) 임대주택 운영

- 임대기간 : 최초 2년, 2년 연장가능
- 임대보증금 : 해당아파트 전세시세(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기준)의 50%
- 입주자 선정 : 재직기간(30), 무주택기간(45), 부약가족수(25)를 기본배점 요소로 하고 가,감점(상훈, 징계 등)을 반영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